

『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의 발굴·육성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미시민장학회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장학회는 「민법」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(안 제2조)
- 장학회 임원의 구성과 선임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 -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
 - 이사장,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
- 장학회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 - 기금은 구미시의 출연금, 민간기탁금, 운용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
-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- 장학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구미시에 귀속토록 규정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「민법」 제32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
-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의 발굴·육성과 지역의 교육·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미시민장학회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구성은 총15조로 규정하였음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장학회 설립방법, 임원구성 및 기금의 조성방법, 사업범위 및 기금출연, 공무원 파견, 잔여 재산의 귀속 조항 등을 규정하면서
- 장학회는 「민법」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토록 규정하고
- 장학회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며, 이사장과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임기 등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
- 기금조성은 구미시의 출연금, 민간기탁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였음
- 장학회 사업으로는 우수학생 인재육성 장학사업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이며, 장학회에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음

- 장학회는 시장에게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였고
- 시장은 장학회의 회계, 재산에 관한 지도감독과 장학회 운영의 위반사항에 대한 출연금 지원중지, 반환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
- 장학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구미시에 귀속토록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·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미래인재 양성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
- 기 운영중인 각종 장학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과의 차별화 시책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금출연의 다변화 전략을 동시에 강구 되어야함
- 앞으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조성 방법, 기존 유사 장학재단과의 운영문제, 장학사업 목적이 적정한지의 여부, 시민장학회 설립의 실효성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